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2
----------	-------

발의연월일 : 2022. 4. 20.

발 의 자 : 이명수 · 김상훈 · 류성걸
박완수 · 배현진 · 서일준
성일종 · 윤두현 · 최춘식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당선소송의 수소법원(受訴法源)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하고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에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의 승

인권을 주는 등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위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제1항 중 “大法院”을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22조제2항 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을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23조제1항 중 “大法院”을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23조제2항 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을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24조 중 “高等法院”을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26조제2항 중 “高等法院長”을 “선거법원장”으로 한다.

제228조제4항 중 “大法院 및 高等法院”을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으로 한다.

제272조의3제1항 중 “고등법원”을 “고등법원 또는 선거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법원”을 “고등법원 또는 선거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선거법원 수석판사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선거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22條(選舉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選 舉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 는 選舉人・政黨(候補者를 추 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 補者는 選舉日부터 30日 이내 에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u>大法院</u> 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選 舉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 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 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 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 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 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 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 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第222條(選舉訴訟) ① ----- ----- ----- ----- ----- -----선거법원----- -----. ② ----- ----- ----- ----- ----- ----- ----- ----- ----- ----- -----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

-----선거법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
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

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 被訴請人(제21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

-----선거법원-----

② -----

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③ · ④ (생략)

第224條(選舉無效의 判決 등) 訴

선거법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
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第224條(選舉無效의 判決 등) ---

請이나 訴狀을 접수한 選舉管理委員會 또는 大法院이나 高等法院은 選舉爭訟에 있어 選舉에 관한 規定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選舉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選舉의 전부나 일부의 無效 또는 당선의 無效를 決定하거나 判決한다.

第226條(訴訟 등에 관한 통지) ① (생략)

②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때 또는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大法院長 또는 高等法院長은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國會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228條(證據調查) ① ~ ③ (생략)

선거법원

第226條(訴訟 등에 관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법원장

第228條(證據調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選舉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大法院 및 高等法院은 高等法院・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

④ -----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고등법원 또는 선거법원-----

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고등법원</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 -----. ② ----- ----- ----- ----- ----- -----<u>고등법원 또는 선거법원</u>----- ----- ----- ----- -----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	---